

광주직할시서구조례 제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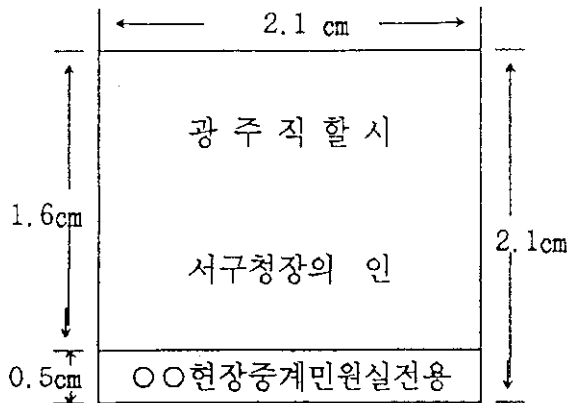
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5항중 "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"을 "제1항 내지 제5항의 공인은"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공인에는 별표5와 같이 현장중계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"별표5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광주직할시 서구 공인조례)

신.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2조 (공인의 비치사용) ①~④ (생략) <u>(신설)</u></p> <p>⑤ <u>제1항내지 제4항의 공인은</u>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 할 수 있다. 다만, (생략)</p>	<p>제2조 (공인의 비치사용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</u> <u>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</u> <u>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재증명등의</u> <u>간단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현장민원</u> <u>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</u> <u>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</u> <u>할 수 있으며, 그 공인에는 별표5와</u> <u>같이 현장 중계민원실 전용임을</u> <u>표시하여야 한다</u></p> <p>⑥ <u>제1항 내지 제5항의 공인은</u></p>